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702
----------	-----

2021. 4. 30.(금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1년 4월 13일

나. 발 의 자 : 이상식 의원 등 7인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4월 16일

라. 상정일자 : 제390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
(2021년 4월 23일 상정의결)

마. 주요내용 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이상식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을 '골목형상점가'로 규정하고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각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

나. 주요내용

- 골목형상점가의 정의 신설(안 제2조제2호의2)
- 조례 내 사용하는 용어인 “상점가”를 “상점가·골목형상점가”로 수정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등을 포함 할 수 있도록 수정함
-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·보완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우경수)

가. 제출배경

- 상점가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라 2천㎡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·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지구를 말하며, 산업통상자원부는 도·소매 점포 비중이 50% 이상인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하고 있음
-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(용역 점포로 분류)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어 왔음
- 이에, 지방자치단체가 2천㎡ 이내에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개정에 따라 각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☑ 충청북도 전통시장·상점가 현황

구분	인정여부				개설주기				공설 시장
	계	인정		미인정	계	상설	정기	병행	
		시장	상점가						
계	77	59	2	16	77	32	10	35	5

☑ 지원 근거법령 및 인정기준

구분	전통시장	상점가	골목형 상점가
관련 법령	전통시장법	유통산업발전법	전통시장법
인정 방법	시·군·구에서 인정 후 공고	별도 인정절차 없음	시·군 조례로 지정
인정 기준	면적 면적이 1천㎡ 이상인 구역	구역면적 2천㎡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	구역면적 2천㎡ 이내
	업종 도·소매업 또는 용역업점포 50개 이상	도·소매업 또는 용역업점포 30개 이상	업종 관계없이 소상공인 운영점포 30개 이상
	비율 도·소매점포 50%이상	도·소매점포 50%이상	해당없음
기타	온누리 상품권 사용가능		

나. 주요 검토내용

- 안 제2조제2호의2는 골목형상점가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함
- 조례 내 사용하는 용어인 '상점가'를 '상점가·골목형상점가'로 수정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함
-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,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서 지원 대상으로 신설된 '골목형상점가'를 추가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임
-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받은

음식점 밀집지역 등의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

○ 아울러, 시·군의 골목형상점가 지원 정책 확산을 이끌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

- '골목형상점가'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마련은 시·군 조례제정을 통해 가능하며 현재까지 2개 시·군이 조례 제정을 마침

• 「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」 / 2020.10.08 제정

• 「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」 / 2021.02.25. 제정

-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즉각적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·군의 관련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(이상식 의원 질의) '골목형 상점가'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마련을 위한 조례가 도내 청주시, 음성군만 제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바, 도내 전 시·군의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도록 독려 바람

○ (경제통상국장 답변) 미 제정 시군 독려토록 하겠음

5. 토 론 요 지 : "없 음"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 음"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"없 음"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”를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·골목형상점가”로 한다.

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전통시장 또는 상점가”를 “전통시장 또는 상점가·골목형상점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”를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·골목형상점가”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의”를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·골목형상점가의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”를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·골목형상점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시설현대화사업
2. 경영현대화사업

제5조제2항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<u>전통시장 및 상점가</u>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----- ----- ----- -----<u>전통시장 및 상점가·골목형상점가</u>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(<u>신설</u>)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“지원대상”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<u>전통시장 또는 상점가</u>를 말한다.</p> <p>5. “시설현대화사업”이란 <u>전통시장 및 상점가</u>의 고객, 매출증대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하는 법 제20조제1항 <u>각호</u>의 사업을 말한다.</p> <p>6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2의2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.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<u>전통시장 또는 상점가·골목형상점가</u>-----.</p> <p>5. -----<u>전통시장 및 상점가·골목형상점가</u>----- -----<u>각 호</u>----- -----.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충청북도 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<u>전통 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 지원</u>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<u>전통 시장 및 상점가·골목형상점가의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지원사업) 도지사는 <u>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</u>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(신설)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(생략)</p>	<p>제4조(지원사업) -----<u>전통시장 및 상점가·골목형상점가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시설현대화사업</u></p> <p>2. <u>경영현대화사업</u></p> <p>3. (현행 제2호와 같음)</p> <p>4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
<p>제5조(업무의 위탁)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<u>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</u> 등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」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5조(업무의 위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필요한</u>----- ----- -----.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상점가”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 한다.
- 2의2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·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“시·군·구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.

□ 소상공인기본법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 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-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